

회 장 선 출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 1항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

1. 차기회장은 현회장 임기만료일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회장선출방법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제12조 2항의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1. 차기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현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구성토록 한다.

제4조(선관위 업무)

1.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2.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후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40일전까지 선거관리지침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회장후보의 자격)

1. 회장후보의 자격은 정관 제15조에 의거 수자원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회장 또는 6년 이상 이사나 감사를 역임하고, 본 회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1.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는 선거일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선거권이 있는 평의원, 이사, 고문 및 참여회원의 2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 나. 후보자의 약력 1부
 - 다. 후보자의 소견 1부
2. 현재 한국수자원학회의 부회장 또는 전담이사 직책을 맡고 있는 후보자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학회 직책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 등록 공고)

1.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일 10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선거권자의 자격)

1. 고문 및 참여회원은 선거권이 주어진다.
2. 선거권은 정관 제17조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단, '5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이라함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한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을 말한다.

3.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9조 1항의 열람기간 동안 받아 선관위에서 검토하여 선거권 부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9조(선거인 명부작성)

1. 선관위는 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7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착오, 누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제10조(선거방법 및 선거일정)

1. 선관위는 선거권자가 인터넷 또는 현장 투표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10일전까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투·개표관리)

1.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학회직인이 있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기표란을 둔다.
3.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4.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5. 개표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명이하의 회원이 참관할 수 있다.
6.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7. 인터넷 투표를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웹주소, 투표방법, 투표기간 및 기타 투표행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8. 전자투표시스템에는 개인정보처리 및 본인 인증을 위한 보안조치해야한다.
9.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종료 즉시 평의원회에 선거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선출방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2.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평의원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선관위는 회장당선자를 정기총회에 공고하여 인준을 받아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승인한 200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한 2002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4년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에서 승인한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에서 승인한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2012년에 시행되는 선거관리지침에 한하여 이사회 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에서 승인한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에서 승인한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평의원에서 승인한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